

오스트리아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 | | | 오스트리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비고 |
|------------------|--|---|---|--|-------|
|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 | | | |
| 제 1 호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 벌채허가서 | 벌채허가서 |
| 제 2 호 |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가 |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 FSC 인증서 (산림 587ha가 FSC 인증을 받음) | |
| | | 나 |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 PEFC 인증서 | |
| | | 다 |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 PEFC Austria 인증서 (산림 310만ha가 PEFC Austria 인증을 받음) | |
| | | 라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제 3 호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 | |

| | | | | | |
|-------|---|---|--|---|-----------|
| 제 4 호 |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가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 | |
| | | 나 |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 | |
| | | 다 |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 | |
| | | 라 |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EU Timber regulation에 따라 사업자들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시판할 때 실사 시스템(Due diligence system(DDS))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 | | 마 |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첨부1. 별채허가서] - 지역별 허가서 양식은 거의 유사



Das Land
Steiermark

BEZIRKSHAUPTMANNSCHAFT LEOBEN

Bezirkshauptmannschaft Leoben

→ Forstfachreferat

[Redacted]

Bearb.: Dr. Wilhelm Edlinger
Tel.: +43 (3842) 45571-210
Fax: +43 (3842) 45571-550
E-Mail: bhln@stmk.gv.at

Bei Antwortschreiben bitte
Geschäftszeichen (GZ) anführen

GZ: BHLN-18893/2017-2

Leoben, am 07.03.2017

Ggst.: Fällungsbewilligung, [Redacted]

[Redacted]

**BESCHEID
SPRUCH**

Die von [Redacted], beantragte Fällung auf Gst. Nr. [Redacted] und [Redacted], KG [Redacted] wird bei Einhaltung nachstehender Bedingungen und Auflagen bewilligt:

- 1) Die Holznutzung(en) ist/sind nach Fläche und Ausmaß wie folgt zu beschränken:

| | UA | Hiebsart | ha/Efm |
|----|------|--|---------|
| a) | 20v | Gliederungshieb zwischen den beiden Forststraßen entlang vom Graben auf Grund von Borkenkäferbefall. | 0,5/100 |
| b) | 40d | Räumung des Restbestandes im Nestbrand auf Grund von Borkenkäferbefall. | 0,8/350 |
| c) | 44hl | Absäumung von Südwesten entlang der Dichtung, wobei die UA sehr gut naturverjüngt ist. | 0,6/250 |
| d) | 12m1 | Gliederungshieb unterhalb der Forststraße bis zum Seeboden, wobei die UA sehr gut naturverjüngt ist. | 0,6/250 |

8700 Leoben • Peter Tunner-Straße 6

Wir sind Montag bis Freitag von 8:00 bis 12:30 Uhr und nach telefonischer Vereinbarung für Sie erreichbar

DVR 0077682 • UID ATU37001007

Steiermärkische Bank und Sparkassen AG: IBAN AT692081524000000406 • BIC STSPAT2G

Das elektronische Original dieses Dokumentes wurde amtlich signiert.
Hinweise zur Prüfung finden Sie unter <https://das.stmk.gv.at>

- | | | | |
|----|--------|--|---------|
| e) | 22q1 | Räumung unterhalb des Gamskögerlweges auf Grund von Borkenkäferbefall. | 0,3/100 |
| f) | 29l | Räumung des Restbestands unterhalb der Forststraße zwischen gesicherter Kultur im Westen und Graben im Osten. | 0,8/300 |
| g) | 30g | Gliederungshieb unterhalb der Forststraße "Heasteign" bis zum Graben. | 0,9/350 |
| h) | 24c1 | Gliederungshieb unterhalb der Forststraße, wobei die UA sehr gut naturverjüngt ist. | 0,8/300 |
| i) | 41m1 | Räumung des restlichen Altholzblockes oberhalb der alten Fütterung auf Grund von Borkenkäferbefall. | 0,8/250 |
| j) | 27l | Gliederungshieb zwischen den beiden Forststraßen. | 0,8/250 |
| k) | 21i | Absäumung von Südwesten entlang der gesicherten Kultur. | 0,8/200 |
| l) | 15l1,2 | Räumung der beiden überalterten Unterabteilungen, wobei auf der Hälfte der Fläche ausschließlich Laubholz stockt und hier wiederum hauptsächlich abgestorben Eschen und Ulmen. | 0,7/300 |
- 2) Bei der Fällung und Bringung ist im Sinne des § 58 Abs. 3 Forstgesetz 1975 i.d.g.F. der Waldboden und der darauf stehende Bewuchs möglichst wenig zu beschädigen, insbesondere die Wiederbewaldung nicht zu gefährden und unvermeidbarer Schaden sogleich nach Bringungsabschluss zu beheben.
 - 3) Für eine rechtzeitige Holzabfuhr aus dem Wald bzw. für die entsprechende bekämpfungstechnische Behandlung des Rundholzes ist zu sorgen.
 - 4) Die Nutzungsflächen sind gemäß § 13 Abs. 1 - 9 leg. cit. binnen 5 Jahren ab Durchführung der Fällung erstmals wieder zu bewalden und so lange nachzubessern und zu pflegen, bis die Verjüngung gesichert ist.
 - 5) Die erteilte Fällungsbewilligung erlischt gemäß § 92 leg. cit. mit Ablauf von 5 Jahren nach Rechtskraft des Bescheides und bei Wechsel im Eigentum des Waldes, ausgenommen bei Übergabe von Todes wegen oder aufgrund von Übergabeverträgen

Rechtsgrundlagen: Forstgesetz 1975, BGBl. Nr. 440/1975 idF BGBl. I Nr. 56/2016
⇒ §§ 88 Abs. 1 und 4

in Verbindung mit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AVG) 1991,
BGBl. Nr. 51 i.d.g.F.

KOSTEN

Gemäß dem V. Teil des Allgemein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1991, BGBl. Nr. 51/91 idgF. sind nachstehende Kosten binnen zwei Wochen anher zu entrichten:

1. Kommissionsgebühren gemäß der Landeskommissionsgebührenverordnung 2013, LGBL. Nr. 123/2012 idF LGBL. Nr. 55/2015 für die Erhebung am 16.02.2017 (1 Amtsorgan, 4/2 Stunden) € 71,60

Diese Kostenbeträge sind von der Antragstellerin/ dem Antragsteller gemäß dem V. Teil des AVG 1991 idgF, binnen zwei Wochen nach Rechtskraft dieses Bescheides auf das Konto der Bezirkshauptmannschaft Leoben (Bankverbindung: Steiermärkische Bank und Sparkassen AG, BIC: STSPAT2GXXX, IBAN: AT692081524000000406) zu überweisen.

BEGRÜNDUNG

Diese Entscheidung stützt sich auf das Ergebnis der örtlichen Erhebung und die Bestimmungen der §§ 80 ff Forstgesetz 1975 i.d.g.F.

Die Kostenvorschreibung erfolgte tarifgemäß.

Gleichzeitig wird ersucht, gemeinsam mit den übrigen Verfahrenskosten nachstehend angeführte Bundesgebühren gemäß dem Gebührengesetz, BGBl. Nr. 267/1957 idF BGBl. I Nr. 163/2015, auf das Konto der Bezirkshauptmannschaft Leoben bei der Stmk. Bank und Sparkassen AG, BIC: STSPAT2GXXX, IBAN: AT692081524000000406, zu überweisen:

| | | |
|---|----------|---------------|
| - für den Antrag vom 16.02.2017 | € | 14,30 |
| - für den Erhebungsbericht vom 16.02.2017 | € | 14,30 |
| zusammen: | € | 28,60 |
| insgesamt (Kosten samt Gebühren) | € | 100,20 |

RECHTSMITTELBELEHRUNG

Sie haben das Recht, gegen diesen Bescheid **Beschwerde** an das Verwaltungsgericht zu erheben. Die Beschwerde ist innerhalb von **vier Wochen** nach Zustellung dieses Bescheides **schriftlich bei uns** einzubringen.

Sie haben auch die Möglichkeit, die Beschwerde über das **Internet** mit Hilfe eines Web-Formulars einzubringen (<https://eq.ov.stmk.gv.at/rmbej>). Bitte beachten Sie: Dies ist derzeit die einzige Form, mit der Sie eine beweiskräftige Zustellbestätigung erhalten.

Weitere technische Einbringungsmöglichkeiten für die Beschwerde (z.B. Telefax, E-Mail) können Sie dem Briefkopf entnehmen. Der Absender trägt dabei die mit diesen Übermittlungsarten verbundenen Risiken (z.B. Übertragungsfehler, Verlust des Schriftstückes).

Bitte beachten Sie, dass für elektronische Anbringen die technischen Voraussetzungen und organisatorischen Beschränkungen im Internet kundgemacht sind: <http://eqov.stmk.gv.at/tvob>

Die Beschwerde hat den Bescheid, gegen den sie sich richtet, und die belangte Behörde zu **bezeichnen**. Weiters hat die Beschwerde zu enthalten:

- die Gründe, auf die sich die Behauptung der Rechtswidrigkeit stützt,
- das Begehren und
- die Angaben, die erforderlich sind, um zu beurteilen, ob die Beschwerde rechtzeitig eingebracht ist .

Eine rechtzeitig eingebrachte und zulässige Beschwerde hat **aufschiebende Wirkung**, das heißt, der Bescheid kann bis zur abschließenden Entscheidung nicht vollstreckt werden.

Für die Beschwerde ist eine Pauschalgebühr von € 30 zu entrichten. Die Gebührenschuld entsteht im Zeitpunkt der Einbringung der Beschwerde und ist sofort fällig. Sie müssen daher bereits **bei der Eingabe der Beschwerde die Zahlung nachweisen**; sie können dazu einen Zahlungsbeleg oder einen Ausdruck über die erfolgte Erteilung einer Zahlungsanweisung der Eingabe anschließen.

Die Zahlung ist auf ein Konto des Finanzamtes für Gebühren, Verkehrsteuern und Glücksspiel (IBAN: AT83 0100 0000 0550 4109, BIC: BUNDATWW) vorzunehmen. Als Verwendungszweck ist das jeweilige Beschwerdeverfahren (Geschäftszahl des Bescheides) anzugeben.

Hinweis:

Wenn Sie die Durchführung einer mündlichen Verhandlung wünschen, müssen Sie diese gleichzeitig mit der Erhebung der Beschwerde beantragen. **Bitte beachten Sie**, dass Sie, falls die Behörde von der Erlassung einer Beschwerdeentscheidung absieht, auf Ihr Recht auf Durchführung einer Verhandlung verzichten, wenn Sie in der Beschwerde keinen solchen Antrag stellen.

Der Bezirkshauptmann i.V.

Dr. Wilhelm Edlinger
(elektronisch gefertigt)

Ergeht an:

1. Dipl.Ing.Dr. Günter Karisch, Peter Tunner-Straße 6, 8700 Leoben, per ELAK
2. Ing. Ewald Lindner, Peter Tunner-Straße 6, 8700 Leoben, per ELAK

Das elektronische Original dieses Dokumentes wurde am 20.01.2017 um 10:00:00 Uhr
Erstellt zur Prüfung sind Sie unter mpas.stmk.gv.at

오스트리아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오스트리아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오스트리아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 오스트리아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오스트리아의 산림법과 규제는 소유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81%를 차지하며, 19%의 산림은 공유림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천연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림법 1975의 21조 (Forstgesetz 1975;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10371>)에는 장소보호림(site-protecting forests)과 대상보호림(object-protecting forests)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소보호림 (site-protecting forest)이란 바람, 물 또는 중력에 의한 침식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산림으로, 보호를 위해서 토양 및 식물 덮개, 조림 보증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산림입니다. 장소 보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람이 부는 사토 또는 표토 위의 산림
2. 카르스트화되어 가는 장소, 특히 침식에 취약한 장소의 산림
3. 바위가 많고 지층이 얇거나 가파른 장소와 같이 재 조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악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산림

4.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경사면 위의 산림
5. 상위 수목 한계선 구역 내의 지피 식생
6. 상위 수목 한계선과 맞닿은 산림 지대

대상 보호림(object-protecting forest)이란 인간, 인간의 정착지 또는 시설, 경작지, 특히 자연 재해나 환경적 파괴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산림을 일컬으며 보호 효과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산림을 뜻합니다.

보호림의 산주는 해당 지역 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 산림을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재식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적절하며 최적의 안정성과 강력한 내부 구조를 가진 식생으로 보존되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합니다. (산림법 1975의 22조 1항과 4항 및 보호림 규제 (Protection Forest Regulation;

<http://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10385>)

보호림의 경우 산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법적 요구사항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산림법 1975」에 따른 요구사항 이외에도, 9개의 연방주 마다 개별적인 자연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보호법에는 자연 보호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산림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산림 경영에 대한 결과/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따르면, 산림 경영은 산주가 담당합니다.

지역행정당국(District Administration Authorities, 이하 DAA ((현재:94))는 불법 벌채 (국내에서 벌채된 목재) 관련 교역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

합니다. DAA는 산림법[산림법 1975, 목재 교역 감시법(Timber Trade Surveillance Act) (Holzhandelsüberwachungsgesetz, 특히, EU 목재 규제 (EU Timber Regulation)의 오스트리아 국내 이행법,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08546>)] 과 자연보호법 (9개의 연방주가 자연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따라서 9개의 다른 자연 보호법이 있습니다.) 등의 각기 다른 많은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 단위의 총괄 당국입니다.

지속가능성과 관광에 관한 연방 부처 (Federal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ourism) 는 산림법 1975 및 목재 교역 감시법 (Timber Trade Surveillance Act) 시행을 위한 관할 감독 당국입니다. 이 부처 내에서 산림법 1975의 담당자는 Katharina Kaiser 이며 목재 교역 감시법 (Timber Trade Surveillance Act) 담당자는 Johannes Hangler 입니다.

KATHARINA KAISER

Division III/3, Legal Policy in Forestry and Forestry Legislation

Federal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ourism

Marxergasse 2, 1030 Vienna, Austria

T +43 1 71100 606681, katharina.kaiser@bmnt.gv.at

JOHANNES HANGLER

Division III/1, Forest Policy and Forest Information

Federal 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ourism

Marxergasse 2, 1030 Vienna, Austria

T +43 1 71100 607309, johannes.hangler@bmnt.gv.at

www.bmnt.gv.at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오스트리아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 오스트리아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산림법 1975」에 따라 목재 벌채에 대한 법률적 틀을 제공하며 다음 조항을 포함합니다.

- 개별 제한 면적 (최대 2 또는 3 ha) (82조)
- 60년 미만의 미성숙 산림 주벌 금지 (80조)
- 0.5 ha 이상의 면적 개별을 위한 벌채 허가 (85조)
- 보호림: 임목의 항시 안정성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 (투자)에 대한 추가 제한사항과 의무 (22조와 보호림규제(Protection Forest Regulation)).

ex) 0.2ha 이상의 면적 개별을 위한 벌채 허가 등.

「산림법 1975」 85조, 22조 4항 및 보호림 규제 (Protection Forest Regulation)는 벌채를 위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정의합니다. (0.5ha 이상, 보호림의 경우 0.2ha 이상의 면적에 대한 개별 및 이에 상응하는 단일 줄기 제거) 2016년, 전체 목재 벌채의 11%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89%는 자유롭게 수행되었습니다.(벌채 허가 불필요)

이 조항은 소유권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산림에 적용됩니다.

85조, 22조 4항 및 보호림 규제 (Protection Forest Regulation)에 따른 벌채 허가권을 제외하고, 벌채 합법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문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산주는 벌채 허가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벌채 위치 및 지역, 벌채 기간과 같이 허가권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발행된 벌채 허가권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중앙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벌채 허가권 발행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94개의 지역행정 당국(DAA)이 산림법 집행과 벌채 허가권의 발행을 담당합니다. 지역 행정당국(DAA)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소 |
|--------------------------------|---|
| 부르겐란트(Burgenland) | https://www.burgenland.at/land-politik-verwaltung/politik-verwaltung/bezirksverwaltungsbehoerden/ |
| 케른텐(Kärnten) | https://www.ktn.gv.at/Verwaltung/Bezirke |
| 북부 오스트리아 (Oberösterreich) | http://www.land-oberoesterreich.gv.at/12737.htm |
| 남부 오스트리아 (Niederösterreich) | http://www.noe.gv.at/noe/Alle_Bezirke_Niederosterreichs.html |
| 잘츠부르크(Salzburg) | https://www.salzburg.gv.at/dienststellen/bezirke |
|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 http://www.bezirkshauptmannschaften.steiermark.at/cms/ziel/106195/DE |
| 티롤(Tyrol) | https://www.tirol.gv.at/bezirke/ |
| 포르알베르크(Vorarlberg) | http://www.vorarlberg.at/vorarlberg/bezirkshauptmannschaften/uebersichtbezirkshauptman.htm |
| 비엔나(Vienna) | https://www.wien.gv.at/kontakte/ma.html |
| 자치 도시 | https://www.help.gv.at/Portal.Node/hlpd/public/content/99/Seite.991304.html |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오스트리아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 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 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PEFC 및 FSC에 따른 산림경영인증(FM)과 임산물 제품인증(CoC) 인증이 사용됩니다.

PEFC Austria는 민간 산림 인증 시스템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인증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합법성은 PEFC 인증의 기본 요건입니다.

<https://www.pefc.at/>

PEFC Austria의 통보를 받는 인증자:

<https://www.pefc.at/fuer-unternehmen/zertifizierungsstellen/>

2000년 9월부터, 오스트리아의 PEFC 인증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모델과 임산물제품인증(CoC)을 이용한 산림 인증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약 3,100,000 ha를 소유한 48,000명의 산주가 효과적으로 인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573개의 임산물제품인증서(CoC)가 유효합니다.

FSC Deutschland (오스트리아에는 국가 FSC 그룹이 없습니다.)

<http://www.fsc-deutschland.de/de-de>

FSC의 통보를 받는 인증자:

<http://www.fsc-deutschland.de/de-de/wald/zertifizierer-finden-01>

FSC: 오스트리아에는 587 ha의 산림이 현재 산림관리협회(FSC)에 따라 인증되었으며, 임산물제품인증(CoC)은 288개입니다.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오스트리아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스트리아에는 PEFC와 FSC 이외에 별도의 산림경영인증(FM)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오스트리아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산림 보고서 2015(Austrian Forest Report 2015)에서 발췌한 내용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6개의 요소가 작용합니다.

1. 산림에 대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인된 약속
2. 건전한 법률적 프레임워크
3. 효율적 조직 구조
4. 균형 잡힌 재정 시스템
5.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대중의 조직적 참여
6. 현명한 모니터링 및 정보 시스템

오스트리아는 포레스트 유럽(Forest Europe) 각료급 회담에서 채택한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명백히 전념해 왔으며, 심지어 이러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산림의 모든 측면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Forest Europe 국가들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범유럽 기준 및 지표 (Pan-Europea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는 오스트리아의 산림 정책 입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사와 보고에 대한 문맥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 및 지표는 오스트리아 산림회담 (Austrian Forest Dialogue)의 참고사항이 되며 오스트리아 산림 보고서 (Austrian Forest Report)에 주제를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 산림프로그램 (Austrian Forest Programme)은 7개의 산림 정치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6개는 Forest Europe 각료급 회담에서 채택된 6개의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범유럽 기준 (Pan-European Criteria for Sustainable Forest)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산림 및 목재 국가가 산림에 대한 국제적 환경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몫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7번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국제적 책임(Austria’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범유럽 기준에 더하여 오스트리아 고유의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가장 최신 버전이며, 끊임없이 수정되고, 산림의 유지 및 경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자와 프로세스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통제 (control) 시스템

신되는 중요하지만, 통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산림이 개발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 개의 기반이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세워져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대한 기준 및 지표가 필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 산림 회담\(Austrian Forest Dialogue\)](#)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범유럽 기준과 지표(Pan-European Criteria and Indicators)에 오스트리아의 특정 상황을 고려한 요소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표마다 목표 (원하는 값)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스트리아의 산림 경영이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혹은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산림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오스트리아 산림 인벤토리\(Austrian Forestry Inventory\)](#) 는 산림에 대한 주요 요소를 파악합니다. 오스트리아 산림인벤토리 (Austrian Forestry Inventory)정보는 개별 행정 구역별 산림 및 다양한 면적의

산림에 대해 신뢰할 만한 개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 건강, 생물 다양성, 산림 보호 효과, 목재 제품의 생산 및 시장에 대해 다양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벌채에 대한 연간 조사를 수행하며, 기타 사회 경제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오스트리아 산림 보고서(Austrian Forest Report)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대한 기준 및 지표를 기준으로, 산림의 상태와 개발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술합니다. 오스트리아 산림에 대해 일관성 있게 수집된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관한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목재 벌채 보고서, 게임으로 인한 훼손 보고서 (game damage report), 산림 관리 시범운영 네트워크 (forestry test operation grid), 오스트리아 농업 부문이 발행하는 그린 리포트(Green Report)에 포함될 산림 부분의 내용 및 국제 보고서 및 통계작성을 위한 오스트리아 측 자료 등이 있습니다.

민간 부문 또한 민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할 만한 사례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민간인증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스트리아 산림의 주요 부분은 PEFC의 인증을 받으며, 그 외 사소한 부분 또한 FSC의 인증을 받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산림 모니터링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오스트리아 산림의 지속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 혹은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성의 시발점인 계획 프로세스에서부터 실행의 방식, 나아가 컨셉이나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순환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방식은 융통성이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FSC는 국가위험평가 (National Risk Assessment, NRA)에서 모든 지표에 대해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https://ic.fsc.org/file-download.cnra-risk-designation-overview.6812.htm>).

2018년 중반, 오스트리아에 대한 NRA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 오스트리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오스트리아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산림 관련 오스트리아 자국법과, 목재유통감시법 (Timber Trade Surveillance Act(Holzhandelsüberwachungsgesetz))을 통해 EU 목재 규제(EU Timber Regulation)를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합법 벌채된 목재가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불법 벌채된 목재의 가공 또는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출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공 및 수출의 합법성 검증을 위한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사업자 (수입업자, 산주)의 EU 목재 규제 (EU Timber Regulation) 의무사항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벌채된 목재의 가공 또는 교역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산림 인증 시스템 (PEFC와 FSC)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목재 (합법성도 지속 가능성에 포함됨)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PEFC와 FSC CoC-인증은 오스트리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붙임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벌채 허가서, 가공 기업 자격, 수출 허가증,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 허가서 샘플 (독일어 버전)